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25927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2592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4. 20 선고 98나6729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사단법인 AAA협회(소송대리인 변호사 방BA)

【피고, 피상고인】김CA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00. 4. 20. 선고 98나6729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관련 증거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김DA이 이 사건 계좌와 통장의 거래인감을

변경하기 전에도 원고의 법인인감을 도용하여 1995. 2. 27.부터 같은 해 6. 14.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7,500만원의 원고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계좌로부터 1995. 2. 25. 금50,000,000원, 같은 해 4. 3. 금15,000,000원, 같은 해 6. 14. 금10,000,000원이 김DA 작성의 예금청구서에 의하여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김DA이 원고의 법인인감을 도용하여 임의로 7,500만원을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원보증인 책임으로서 원고에게 김DA이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되는 1997. 3. 1.까지 사이에 횡령한 225,761,82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그러나 채용증거에 의하면 김DA이 원고에게 합계 48,185,680원을 입금·변제한 사실과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EA은행(이하 EA은행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의 법리를 들어 서울지방법원 98가합39669호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1998. 10. 13. 위 법원으로부터 180,317,012원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11. 16. 경 EA은행과 사이에 그 손해배상금을 225,396,266원으로 정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이를 수령한 후 위 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김DA이 이 사건 계좌로부터 예금을 인출·횡령함으로써 원고협회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전체 횡령액 459,334,820원에서 김DA이 원고협회에 입금·변제한 48,185,680원과 원고협회가 EA은행으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한 225,396,266원을 공제한 금액이라 할 것인데, 김DA과 EA은행이 위와 같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변제함에 있어 김DA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중 이를 공제할 채무를 지정한 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횡령원금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김DA과 EA은행의 각 변제액은 김DA의 횡령행위로 인한 각 손해배상채무 중 먼저 발생하여 이행기에 도래한 순서에 따라 각 그 횡령원금의 손해배상채무에 김DA의 각 입금액, EA은행의 배상액의 순으로

충당·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DA의 최초 횡령시부터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1997. 3. 1.까지 사이의 각 횡령행위로 인한 것으로 그 후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나머지 손해배상채무보다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다 할 것이어서 김DA과 EA은행의 각 변제액 합계 273,581,946원은 피고의 배상책임액인 225,761,820원에 우선적으로 전액 충당·공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로써 모두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민법 제476조, 제477조의 변제충당 규정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할 때, 즉 채무의 일부 변제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심의 EA은행의 변제액 충당에 관한 판단 부분은 위 은행의 변제액 225,396,266원이 일부 변제 즉, EA은행의 입장에서 보아 그와 같은 변제로 EA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손해배상채무를 전부 소멸시킬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당초 원고는 EA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계좌와 통장의 거래인감 변경과정에서 위 은행직원이 내부규정에 위배하여 원고협회의 대표자에게 확인하지 않은 과실 등이 있다는 이유로 사용자책임의 법리를 들어 서울지방법원 98가합39669호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1998. 10. 13. EA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과실을 60%로 인정한 다음 인감변경 이후의 횡령액 391,334,360원과 이 사건 횡령행위가 없었을 경우 원고가 지급받았을 이자 59,458,172원을 합하여 450,792,532원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하여 그 중 EA은행의 과실비율 40%에 상당하는 180,317,012원(= 450,792,532 × 0.4)의 배상을 명한 사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과실비율에 불복한 듯 하다), 항소심 계속중이던 1998. 11. 16. 경 원고와 EA은행 사이에 제1심 인정의 손해액 450,792,532원 중 50%에 상당하는 225,396,266원(종전보다 EA은행의 부담 부분이 증가한 것이다)을 EA은행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그 금액을 지급받으면 소를 취하하고, 위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계좌에 관한 모든 권능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그와 같은 합의에 따라 EA은행이 원고에게 225,396,266원을 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와 같은 EA은행의 합의와 변제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은행이 변제한 금액은 위 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 김DA의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하여 위 은행이 원고에게 사용자책임으로 부담하여야 할 위 은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 전부를 배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즉 더 이상 원고로서는 EA은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EA은행의 변제액은 위 은행의 부담부분인 횡령액의 50%, 즉 신원보증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각 50%의 횡령액에 변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신원보증인이 피보증인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피보증인의 책임범위와 동일한 것으로서 피보증인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기초로 하여 신원보증법 제6조 소정의 사유를 참작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피보증인의 배상책임액 일부가 변제된 때에는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초로 그 보증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148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심으로서 신원보증기간까지의 횡령액 중 EA은행의 변제액 가운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50%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초로 신원보증법 제6조에 따라 그 보증책임의 범위를 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EA은행의 변제를 일부 변제로 보고 이를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신원보증기간까지의 횡령액에 우선하여 충당한 다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그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정당하기에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